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0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전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3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3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검토기간: 2025. 2. 26(수) ~ 3. 5.(수)

## 2. 개정이유

- 금주구역 지정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6항)
- 나.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항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지정한 ‘금주 구역’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, 다수의 주민들이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음주 가능시간 및 장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